

#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5조제3항중 ' 노래연습장' 다음에 '비디오물감상실업, 단란주점'을 삽입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